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 설명자료

대한체육회 전략기획부
대한체육회장 선거 준비 TF팀

CONTENTS

I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개요

II 선거운영위원회

III 회장선출기구 구성

IV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V 투 · 개표 및 당선인 결정

VI 금지행위 및 제재조치

VII 주요 안내사항

I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개요

1. 선거개요
2.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요

I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개요

1. 선거개요

선거일자

- '25. 1. 14.(화) * 회장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 (규정 제7조)

선거장소

-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서울 송파구)

선거기간

- 20일 *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 ~ 선거일 (규정 제6조)

선거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무위탁선거 * 회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규정 제5조)

-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제7항,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규정) 대한체육회 「정관」 제24조, 제24조의2, 「회장선거관리규정」

선거인규모

- 약 2,300명

✓ (참고사항)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임기 만료일: '25. 2. 27. * 대한체육회 제31차 이사회 의결('24.5.31.)

[참고]**선거 절차**

예정일자	구 분	내 용
'24.08.27 위탁선거법	선거 관리 위탁신청 (대한체육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위탁범위: ①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②선거참여·투표절차, 홍보에 관한 사무, ③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조사 ■ 기 한: 회장 임기 만료일 전 180일까지 ※ 선거인명부: 위탁단체가 작성
'24.08.27~'25.1월 중 위탁선거법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선거관리위원회)	■ 활동범위: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안내·예방 및 감시·단속·조사 ※ 후보자의 기부행위 금지 : '24.7.31~
'24.11월 중 위탁선거법	선거일 공고 (선거관리위원회)	■ 기한: 선거인명부 작성 개시일 전일까지 * 선관위에서 11월 중 공고 예정
~'24.11.29 정관	후보자등록의사표명서(비상임임원) 제출 및 사직(상임임원 및 직원) 기한	■ 기한: 회장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원사·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해당
'24.12.09 회장선거관리규정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대한체육회)	■ 기한: 회장 임기만료일 전 80일까지 구성 ■ 역할: ▲ 선거인수 배정, ▲ 예비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처리, ▲ 선거운동 관련(위반사항 제재 포함), ▲ 후보자정책토론회 등

[참고]**선거 절차**

예정일자	구 분	내 용
~'24.12.19. 회장선거관리규정	예비선거인 추천 및 명부 작성 (선거운영위원회)	■ 절차 - 회장 임기만료일 전 70일까지 선거인수 통보 - 회원단체등은 임원, 대의원 명단을 회장 임기만료일 전 80일까지 제출 * 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시스템을 통해 예비선거인 무작위 추첨(10배수 이내) 및 명부 작성(선거인명부 작성 개시일 전일까지)
'24.12.20.~'24.12.25. 회장선거관리규정	선거인 추천 및 명부 확정 (선거운영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 명부작성: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해 예비선거인 중 선거인 무작위 추첨 및 명부 작성(2일의 범위 내)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3일간 ■ 확정명부: 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
'24.12.24.~25. 위탁선거법	후보자등록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간
'24.12.26.~'25.01.14. 위탁선거법 회장선거관리규정	선거기간	■ 선거기간 20일(선거운동기간 19일* + 선거일 1일) * 선거운동기간: '24.12.26.~'25.01.13.
'25.01.14. 위탁선거법 회장선거관리규정	선거일/투·개표 실시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일 결정: 선관위·위탁단체 협의(회장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 ■ 선관위 역할: 투표소·개표소 설치, 후보자순위추첨, 투·개표록 작성, 득표수 공표 등

I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개요

2.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요

- ❖ 제1장 총칙
- ❖ 제2장 선거인 명부의 작성
- ❖ 제3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 ❖ 제4장 선거운동
- ❖ 제5장 금지행위 및 제재조치
- ❖ 제6장 투·개표 및 당선인 결정 등
- ❖ 제7장 보칙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	2016. 3. 21.
개정	2016. 6. 16.
개정	2016. 7. 19.
개정	2016. 8. 26.
개정	2017. 2. 16.
개정	2017. 4. 3.
개정	2017. 8. 28.
전부개정	2020. 10. 23.
개정	2020. 11. 5.
개정	2022. 12. 26.
개정	2024. 7. 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라 대한체육회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회장 임기만료일)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정관 제29조제6항에 따른 체육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임기만료일의 기준이 되는 정기총회일을 회장선거가 있는 해의 전년도 1월 1일까지 확정하고, 이에 따른 회장 임기만료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20.]

제2조(선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체육회는 회장선거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80일까지 선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설명회

Ⅱ 선거운영위원회

II 선거운영위원회

➤ 구성

- **9~11명 외부인사(회장 임기 만료일 전 80일까지 구성~선거일 후 60일까지)**

➤ 위촉절차

- **법조계, 체육학계, 스포츠언론계 등 관계단체로부터 추천**
→ 문체부와 협의 및 위원 선정 → 이사회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

➤ 주요기능

- **선거인 수 배정, 예비선거인명부 및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회장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 주최**
- **선거 또는 당선효력 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심의 및 결정 등**

[참고]

규정 제2조(선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대한체육회장 선거** (이하 “회장선거”라 한다)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임기 만료일 전 80일까지 선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인 수의 배정
2. 예비선거인명부의 작성
3. 선거인명부의 작성
4.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5.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6. 회장선거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정책토론회 주최
7. 회장선거와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8. 선거 또는 당선 효력 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심의 및 결정
9. 정관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국제관계 업무 시의 활동계획이 회장선거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③ 위원회는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존속하되,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존속 중에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 존속기간은 그 선거일 후 60일까지로 연장된다.

규정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외부인사로 구성한다.

1. 체육회 대의원, 임직원

2. 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 회원시·도체육회의 회원인 시·군·구체육회(이하 “회원단체등”이라 한다)의 대의원, 임직원

3. 제15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제출한 체육회 또는 회원단체등의 비상임 임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정당의 당원

② 위원회의 위원은 체육회가 법조계, 체육학계, 스포츠언론계 등 관계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회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한다.

1. 사임의사를 표명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친족이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회장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④ 위원회의 위원 재적수가 9명 미만일 경우, 제2항의 관계단체로부터 이미 추천된 사람 중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서 보선 대상자를 결정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체육회의 직원 중에서 정한다.

[참고]

기관별 역할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선관위)

- 선거 관리, 제도·홍보
- 후보자 등록 접수
- 위반행위 단속·조사
- 투·개표 등

선거운영
위원회
(위원회)

- 선거인 수 배정
- 선거인명부 작성 관련
- 선거 또는 당선 효력
이의제기 심의 등

회원단체등
(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 경기인등록시스템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등록 독려
- 임원, 대의원 명단 제출
(회장 임기만료일 전 80일까지)

Ⅲ 회장선출기구 구성

1. 선거인 자격 및 구성
2. 선거인 수 배정
3. 예비선거인 추천 & 명부작성
4. 선거인 추천 & 명부작성

III 회장선출기구 구성

1. 선거인 자격 및 구성

대한체육회

- 대한체육회 대의원

회원종목단체(정·준)

- 임원, 대의원,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중
각 단체별 예비선거인 중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회원시·도체육회

- 임원, 대의원, 선수, 지도자 중
각 단체별 예비선거인 중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시·군·구체육회

- 임원, 대의원 중에서 각 단체가 추천한 1명(이하 지정선거인)과
각 단체별 예비선거인 중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 ✓ 경기인 등록 및 임원·대의원명단은 **회장 임기만료일 전 90일 기준 자료('24.11.29.)**
- ✓ 선거일 기준 ① **만 18세 이상**, ②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의 경우 **경기인등록 시스템에 등록**, ③ 임원의 경우, **해당 단체의 임원으로 재임** 하고 있어야 함

[참고]

규정 제8조(선거인) ① 생략

② 선거인은 선거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2. 선거인이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인 경우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른 등록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3. 단체의 임원인 경우 재임하고 있어야 함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단체의 장은 사고 또는 회장선거 이외의 선거의 출마로 인해 직무 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선거인이 된다. 다만, 단체장이 궐위되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가 선거인이 된다.

④ 후보자, 체육회의 상임 임원 및 직원, 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참고]**회장선거관리규정 변경내용**

변경 전(제41대 회장선거)	변경 후(제42대 회장선거)
제8조(선거인) ① 정관 제24조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 기구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정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의원 2. 회원종목단체(인정단체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하는 임원과 대의원(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선수, 지도자, 동호인 중에서 각 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3. 시·도체육회를 구성하는 임원등, 선수, 지도자, 동호인 중에서 각 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4. 시·군·구체육회를 구성하는 임원등 중에서 각 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②~④생략	제8조(선거인) ① 정관 제24조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 기구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정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의원 2. 회원종목단체(인정단체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임원과 대의원(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중에서 각 단체별 예비선거인 중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3. 회원시·도체육회의 임원등, 선수, 지도자 중에서 각 단체별 예비선거인 중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4. 시·군·구체육회(회원시·도체육회의 회원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임원등 중에서 각 단체가 추천한 1명과 각 단체별 예비선거인 중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②~④생략

- ✓ ‘동호인-선수’ ⇒ **‘선수’로 명칭 통합**(경기인등록규정 2021.12.27. 개정)
- ✓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직군 추가**
- ✓ **예비선거인 선정절차 변경: 회원단체등이 선거인 후보자 추천&추천 ⇒ 위원회가 예비선거인 무작위 추천**

[참고]**선거인 관련 주요 변경사항(제41대 대비)**

구분	변경 전(제41대 선거)	변경 후(제42대 선거)
회원종목단체 (정·준회원)	임원, 대의원, 선수, 지도자, 동호인	임원, 대의원,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회원 시·도체육회	임원, 대의원, 선수, 지도자, 동호인	임원, 대의원, 선수, 지도자
시·군·구 체육회	임원, 대의원	임원, 대의원
	2명 무작위 추천	1명: 추천 1명: 이사회 의결을 거쳐 1명을 지정하여 추천
예비선거인* 선정 절차 (공통) * 舊 선거인 후보자	① 회원단체등: 단체별 '선거인 후보자' 추천 후 위원회에 추천	① 회원단체등: 임원, 대의원 명단 제출 ② 선거운영위원회: 예비선거인 추천
	② 위원회: 중복여부, 자격유무 등을 확인하여 선거인 후보자 명부 작성	③ 위원회: 중복여부, 자격유무 등을 확인하여 예비선거인 명부 작성

III 회장선출기구 구성

2. 선거인 수 배정

회원단체등 역할

- **제출사항:** 임원, 대의원(이하 임원등) 명단 제출
- **제출기한:** 2024. 12. 9.(월)까지 * 회장 임기만료일 전 80일까지
- **제출방법:** 대한체육회장 임기만료일 전 90일 기준('24.11.29. 기준) 임원등 명단을 대한체육회 양식(추후 공문발송)에 따라 작성 및 제출

✓ 사·군·구체육회 지정선거인 제출

⇒ 임원등 명단을 제출한 시·군·구체육회는, 선거운영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원등 중 지정선거인 1명 추천('24.12월 둘째주 예정)

III 회장선출기구 구성

2. 선거인 수 배정

선거운영위원회

1. 단체별 선거인 수 배정: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0조(선거인 수 배정 기준)

2. 직군별 비율 설정: 직군별(임원등,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10%~40%

- * 각 직군별 추천 가능한 예비선거인 수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비율을 미충족하는 단체
→ 위원회의 결정으로 배분 비율을 다르게 정함

3. 단체별 배정 선거인 수 통보: ~'24.12.19.까지 * 회장 임기만료일 전 70일까지

[참고]

규정 제10조(선거인 수 배정 기준) ① 위원회는 정관 제24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선거인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회원단체등에 선거인 수를 배정한다.

1. 정회원단체(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도체육회): 각 단체 당 4명
2. 준회원단체(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도체육회): 각 단체 당 2명
3. 삭제 <2022. 12. 26.>
4. 시·군·구체육회: 각 단체 당 2명

② 위원회는 정회원종목단체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인수를 추가로 배정한다.

1.~7. (생략)

③ 위원회는 정회원시·도체육회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인수를 추가로 배정한다.

1.~4. (생략)

④~⑥ (생략)

⑦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단체별 선거인 수를 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각 단체의 직군(임원등,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별 선거인 수를 배정한다.

⑧ (생략)

III 회장선출기구 구성

2. 선거인 수 배정

회원종목단체

정회원종목단체

기본표 각 4표 + **추가표**

준회원종목단체

기본표 각 2표

< 정회원종목단체 추가 배정표 >

대회수준	올림픽대회(6표), 아시아경기대회(3표), 전국체전 및 대축전(1표)
전문목적 선수 수(18세이하부 이상)	상(2표), 중(1표), 하(0표)
육성목적 선수 수(15세이하부 이하)	상(2표), 중(1표), 하(0표)
생활목적 선수 수(18세이하부 이상)	상(4표), 중(2표), 하(1표)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학생수	상(4표), 중(2표), 하(1표)
지도자수(18세이하부 이상)	상(1표), 하(0표)
지도자수(15세이하부 이하)	상(1표), 하(0표)
심판 수	상(1표), 하(0표)
선수관리담당자 수	상(1표), 하(0표)

- ✓ **올림픽종목**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하는 선거인이 전체 선거인 수의 **과반수가 되지 못할 경우**
 ⇒ **올림픽대회 종목 정회원종목단체에 추가배정(과반수가 될 때까지)**
- ❖ **정회원종목단체별 배정표(안): 최소 6+a 표 ~ 최대 26+a 표**

III 회장선출기구 구성

2. 선거인 수 배정

추가표 배정기준자료(안)

<정회원종목단체>

- **대회기준**
 -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수:** 경기인등록시스템의 회장임기만료일 전 90일 기준 자료
-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학생 수:** 회장임기만료일 전 90일 기준 가장 최근 자료

III 회장선출기구 구성

2. 선거인 수 배정

지방체육회

회원시·도체육회
 기본표 **각 4표** + **추가표**

< 회원시·도체육회 추가 배정표 >

인구 수	상(3표), 중(2표), 하(1표)
운동부 수(18세이하부 이상)	상(6표), 중(4표), 하(2표)
운동부 수(15세이하부 이하)	상(6표), 중(4표), 하(2표)
체육예산비율 (시·도 체육예산이 시·도 전체예산에 서 차지하는 비율)	상(3표), 중(2표), 하(1표)

시·군·구체육회
 기본표 **각 2표**

구분	시·군·구체육회 배정표
임원, 대의원 중 무작위 추첨	1표
임원, 대의원 중 지정선거인	1표

❖ 회원시·도체육회별 배정표(안): **최소 10 표 ~ 최대 22 표**

III 회장선출기구 구성

2. 선거인 수 배정

추가표 배정기준자료(안)

<회원시·도체육회>

- **운동부 수:** 경기인등록시스템의 회장임기만료일 전 90일 기준 자료
- **인구 수:** 회장임기만료일 전 90일 기준 가장 최근 자료
- **체육예산비율:** 회장임기만료일 전 90일 기준 가장 최근 자료

III 회장선출기구 구성

2. 선거인 수 배정

시·군·구체육회 지정선거인

0	회장선거관리규정	시·군·구체육회 각 단체별 선거인 수 2명 배정
↓		
1	위원회 → 시·군·구체육회	시·군·구체육회의 임원 및 대의원 명단 제출 요청
↓		
2	시·군·구체육회 → 위원회	임원 및 대의원 명단 제출
↓		
3	위원회 → 시·군·구체육회	제출한 단체(명단)에 한하여 지정선거인 1명 추천 요청
↓		
4	시·군·구체육회 → 위원회	임원 및 대의원 중 1명을 이사회를 거쳐 지정선거인으로 추천
↓		
5	위원회	시·군·구체육회에 배정한 선거인 2명 중, 1명은 각 단체에서 추천받은 지정선거인으로 하고, 1명은 제출받은 임원 및 대의원 명단에서 지정선거인을 제외하고 무작위 추첨

III 회장선출기구 구성

3. 예비선거인 추천 & 명부작성

선거운영위원회

구분	내용
예비선거인 추천 및 명단 작성	각 단체별 배정 선거인 기준 10배수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 전산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천 및 예비선거인 명단 작성*
예비선거인 명부 작성 (~'24.12.19.)	추천 명단에서 중복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미동의자, 선거인 자격이 없는 자를 제외하여 예비선거인 명부 작성

✓ 예비선거인 추천 기준

- 회장 임기만료일 전 90일을 기준으로 재임 중인 임원등과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추천
- 대한체육회 대의원, 시·군·구체육회 지정선거인 제외

III 회장선출기구 구성

4. 선거인 추천 & 명부작성

선거운영위원회

구분	내용	시기
선거인 추천 및 명부작성	선거관리 전산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천 및 명부 작성	'24.12.20.~21.
선거인 명부 열람	선거인 본인의 선거인 명부 등재여부 확인, 정보 누락 또는 오기정정, 자격이 없는 선거인에 대한 이의제기 등	'24.12.22.~24.
선거인 명부 확정	열람 기간 종료일 다음날 확정	'24.12.25.

IV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자격
2. 후보자 등록
3. 선거운동

Ⅳ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자격

후보자 자격

-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5조(후보자의 자격)제1항에 따라,
「정관」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후보자 등록 전 조치사항

구분	내용
대한체육회 및 회원단체등의 비상임임원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24.11.29.)
대한체육회 및 회원단체등의 상임임원 및 직원	사직(~'24.11.29.)

- 규정 제15조(후보자의 자격)** ① 선거일 현재 정관 제30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 ②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체육회 또는 회원단체등의 비상임임원은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90일 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 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회원단체등의 회장이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 부터 선거일까지 회원단체등의 정관에 따라 회원단체등의 부회장(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 로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이 직무를 대행하되, 회원단체등의 부회장 전원이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 ④ ~⑥ “생략”
- ⑦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체육회 또는 회원단체등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 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⑧ 체육회는 제2항에 따라 회원단체등 비상임임원의 등록의사 표명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한 사람의 소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⑨ 체육회는 제7조제4항에 따라 선거일을 공고할 때 후보자 등록 자격 및 요건을 함께 게시 하여야 한다.

Ⅳ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2. 후보자 등록

후보자 등록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 사무 진행

- ✓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공고
(11월 중)
- ✓ 후보자 등록 서류 접수 등
(’24.12.24.~25.)

후보자 등록 서류(예시)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나. **피성년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 다.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있는 후보자의 경우,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확인
 - 라. 정관 제24조의2제1항 및 이 규정 제15조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 또는 정관 제24조의2제6항 및 이 규정 제15조제7항의 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범외 경력 조회 회보서
3.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없는 후보자의 경우,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
4. 회장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서약서
5. 제16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관리상 필요한 서류로서 선관위가 정하는 서류 등

IV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3. 선거운동

정의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선거운동 기간

- **19일간** * 선거기간(20일)= 선거운동기간(19일)+선거일(1일)

선거운동주체

-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원

선거사무소

- 1개의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사무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 선거사무원 가능

IV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3. 선거운동

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 주체	내용
후보자	1. 선거사무소 게시물의 설치 및 변경 2. 선거공보를 이용한 선거운동 3.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4. 정보통신망(SNS 포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5. 윗옷(上衣) 및 어깨띠,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6. 위원회가 주최하는 1회 이상의 후보자 정책토론회 참석(단, 위원회는 후보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2회 이상의 정책토론회를 실시할 수 있다) 7. 위원회 이외의 단체가 주최하는 후보자 대상 토론회 참석. 다만, 후보자 모두가 개최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8. 선거일 당일 후보자 소견발표
선거사무원	1.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2. 정보통신망(SNS 포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3. 윗옷(上衣) 및 어깨띠,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V 투 · 개표 및 당선인 결정

V 투·개표 및 당선인 결정

선거일자

▪ 2025. 1. 14.(화)

선거장소

▪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서울 송파구)

선거방법

▪ 현장투표(무기명 비밀투표)

당선인 결정

▪ ‘선거운영위원회’에서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결정

- ①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이거나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에 후보자가 1명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VI 금지행위 및 제재조치

1. 금지행위
2. 제재조치

VI 금지행위 및 제재조치

1. 금지행위

금지 행위	주요 내용	비고
매수, 이해유도 금지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자격이 있는 자 포함. 이하 같음)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의 이익, 공사직 제공, 제공 의사표시 및 약속 금지 · 후보자 등록 저지 및 사퇴 목적으로 상기 행위 금지 · 상기 행위에 따른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제공 의사표시 승낙하는 행위 금지 · 상기 행위들에 대하여 지시, 권유, 알선, 요구하는 행위 금지 · 선거인(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게 선물 또는 돈봉투 등의 금품 운반 행위 금지	제23조
호별방문 제한	· 선거인 호별 방문, 특정장소 소집 금지 · 공개된 장소 방문은 가능	제24조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금지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이하 같음),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련 허위사실 공표 금지 ·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비방 금지	제25조
사위등재 금지	· 선거인명부, 예비선거인명부 허위 등재, 고의 누락 또는 거짓 기재 금지	제26조
사위투표 금지	· 성명 사칭, 신분증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는 행위 금지	제27조
선거사무 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교란 금지	· 선관위, 선거운영위원회 등 선거사무 종사자 폭행·협박·유인·체포·감금 행위 금지 ·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 등 또는 선거인명부 은닉·파손 등 금지	제2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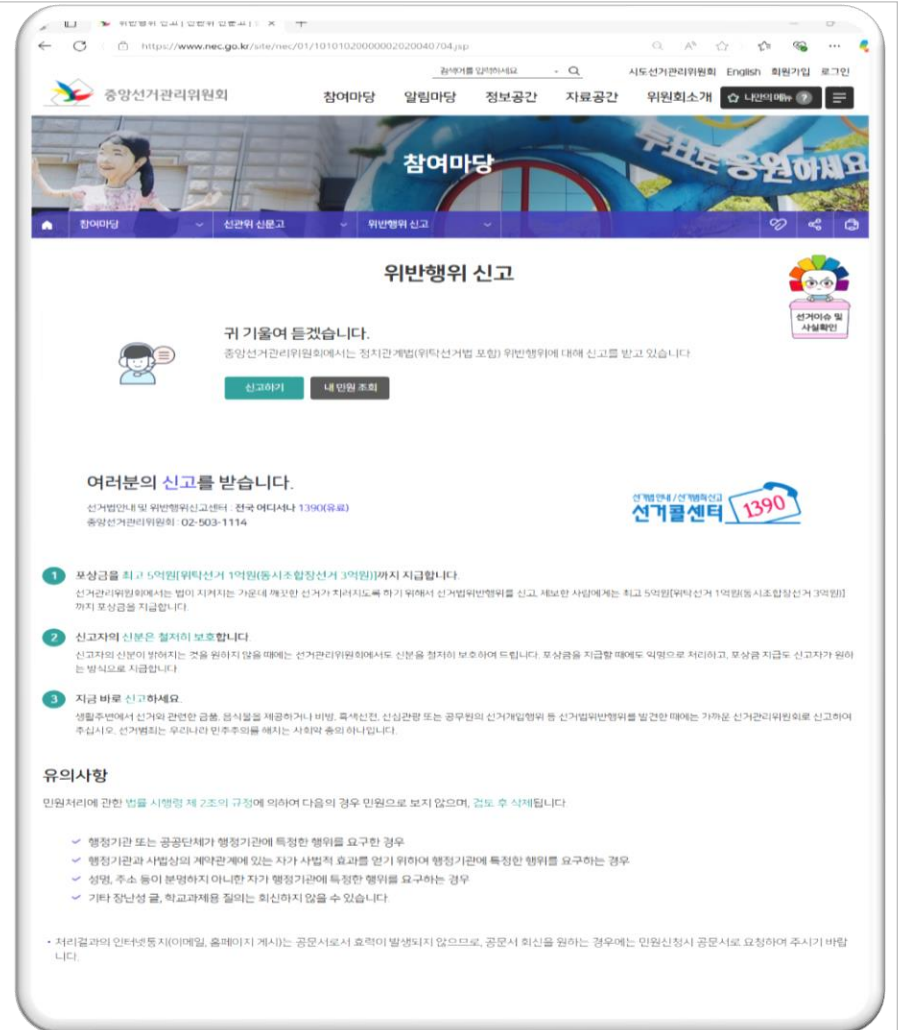
VI 금지행위 및 제재조치

1. 금지행위

금지 행위	주요 내용	비고
기부행위 제한	·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재산상 이익 제공(약속) 금지 ⇒ 위탁선거법 제34조 개정('24.7.31.시행) ·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수령), 지시·권유·알선 금지 등	제29조
정당 등 표방 금지	· 선거운동(소견발표)시 특정 정당, 선출직 공직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 또는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 경력 표방 포함) 금지	제30조
대한체육회 임직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운동 기획 참여, 실시 관여 금지 ·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발표 금지 · 임기만료일 전 90일(또는 비상임 임원 후보자 등록의사 제출 시)부터 임직원의 아래 해당 행위 금지 - 특정후보자 업적 홍보 행위 -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또는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사업계획 상 예정된 사항 이외 행사 개최 및 후원하는 행위 - 사업계획 상 예정된 사항 이외 사업실적·활동상황 등 홍보물 발행 금지 ·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 출장 금지,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체육회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 방문 금지 등	제31조
선거일 후 답례금지	· 후보자, 그의 배우자, 그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일 후 당선 축하 및 낙선위로 목적의 금전·물품·향응 제공 및 선거인 모임 금지 등	제32조

[참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반행위 신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신고
(대한체육회장 선거 관련 위반행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 참여마당 → 선관위신문고 → 위반
행위신고 → 신고하기**
- <https://www.nec.go.kr/>



VI 금지행위 및 제재조치

2. 제재조치

구분	제재조치(선거운영위원회)	의결정족수
✓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등록무효,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나. 선거사무원등의 자격박탈 다. 선거권 박탈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인사위원회 또는 위반행위자의 소속단체에 징계 요청(추후 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시·도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의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서의 등록 제한 및 임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 제한을 포함) 마.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 위 제재 항목 병과 가능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 위 항목 이외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요청, 경고 또는 시정명령(1차에 한정한다)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 이 외 「위탁선거법」 등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Ⅶ 주요 안내사항

1. 주요 변경사항
2. 체육단체 역할

Ⅶ 주요 안내사항

1. 주요 변경사항

선거인 관련 주요 변경사항(제41대 대비)

구분	변경 전(제41대 선거)	변경 후(제42대 선거)
회원종목단체 (정·준회원)	임원, 대의원, 선수, 지도자, 동호인	임원, 대의원,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회원 시·도체육회	임원, 대의원, 선수, 지도자, 동호인	임원, 대의원, 선수, 지도자
사·군·구 체육회	임원, 대의원	임원, 대의원
	2명 무작위 추천	1명: 무작위 추천 1명: 이사회 의결을 거쳐 1명을 지정하여 추천
예비선거인* 선정 절차 (공통) * 舊 선거인 후보자	① 회원단체등: 단체별 '선거인 후보자 ' 추천 후 위원회에 추천	① 회원단체등: 임원, 대의원 명단 제출 ② 선거운영위원회: 예비선거인 추천
	② 위원회: 중복여부, 자격유무 등을 확인하여 선거인 후보자 명부 작성	③ 위원회: 중복여부, 자격유무 등을 확인하여 예비선거인 명부 작성

Ⅶ 주요 안내사항

2. 체육단체 역할(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1. 경기인 등록 독려

- 경기인등록시스템에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등록 독려 및 등록정보 최신화 요청

2. 임원, 대의원 명단 제출

- 각 단체별 임원 및 대의원 명단 제출(~'24.12.9.까지 / 회장 임기만료일 전 80일까지)

3. 시·군·구체육회 지정선거인 추천

- 임원 및 대의원 명단을 제출한 시·군·구체육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원 및 대의원 중 지정 선거인 1명을 추천(~'24. 12. 둘째주 예정 /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기한)

- ✓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는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 필수
- ✓ 경기인 등록 및 임원·대의원명단은 **회장 임기만료일 전 90일 기준 자료**('24.11.29.)
- ✓ 선거일 기준 ① **만 18세 이상**, ②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의 경우 **경기인등록 시스템에 등록**, ③ 임원의 경우, **해당 단체의 임원으로 재임** 하고 있어야 함

**THANK
YOU**

